「KB 매직카적금」특약

제 1 조 적용범위

"KB매직카적금(이하'이 적금'이라 합니다)"거래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,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예금거래기본약관 및 적립식예금약관을 적용합니다.

제 2 조 가입대상

이 적금의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으로 하며, 1인 1계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.

제 3 조 예금과목 및 계약기간

이 적금의 예금과목은 정기적금으로 하며, 계약기간은 1년, 2년, 3년으로 합니다.

제 4 조 저축방법 및 저축한도

이 적금의 저축금은 회차별 1만원 이상 원단위로, 월(해당월의 초일부터 말일까지) 1백만원이내에서 저축 가능합니다.

제 5 조 이율의 적용

- ① 이 적금의 만기이율은 기본이율과 우대이율을 합하여 계약기간 동안 적용합니다.
- ② 기본이율은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에 고시한 계약기간별 이율을 적용하며, 우대이율은 제6조에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합니다.

제 6 조 우대이율

이 적금의 우대이율은 만기 해지하는 계좌에만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에 고시한 아래 표의 우대이율(최고 연0.5‰)을 적용합니다.

| 구 분 | 적용내용 |
|--------------|--|
| 거래감사 | 신규일이 포함된 달부터 3 개월이 경과한 달까지 「50 만원 이상 급여이체실적^{주1}」 |
| 우대이율 | 또는 「30 만원 이상 KB 국민카드 매입실적」이 발생한 월수가 1 개월 이상인 경우 연 0.3%p |
| 내차마련 우대이율 | 계약기간 중 자동차를 구입하고 증빙 서류 제출하는 경우 연0.1%p |
| 안전운전 우대이율 | 계약기간 중 최근 1 년 간(증빙서류 발급일^{주2} 기준) 자동차 무사고를 증빙하는 서류 제출하는 경우 연 0.1%p |

- ※ " 내차마련 우대이율" 및 " 안전운전 우대이율"의 제출서류는 가입 고객 본인 기준입니다.
- ※ "월(달)"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합니다.
- ※ KB 국민카드 매입실적은 KB 국민카드 사용전표가 KB 국민카드사로 매입된 경우 인정됩니다.
- ※ KB 국민카드 매입실적 산정 시 기업카드 및 가족카드, 선불카드 매입금액은 제외됩니다.

주 1) 급여이체실적 인정기준

- KB국민은행과 급여이체 또는 대량이체 계약에 따른 급여성 선일자, 탑라인, 기업인터넷뱅킹등에 의한 급여이체 (단, 급여이체 인정금액은 건별 2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)

주 2) 증빙서류 발급일은 계약기간 이내인 경우만 인정

제 7 조 특별중도해지

① 계약기간의 1/2 이상을 경과한 계좌로 계약기간 중에 이 적금 가입고객이 자동차를 구입하고 해당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창구에 제시하는 경우 특별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.

※ 증빙서류(예시): 자동차매매계약서 등

② 특별중도해지 시에는 계약기간 별 만기이율을 적용합니다.

이 약관은 2015.6.25부터 시행합니다.